

## 6대 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6대 이하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3일간 실시한다. 이는 1~5대 기업집단에 대해서 '9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부당내부거래 조사 및 시정조치한 반면, 6~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지 않아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 재벌개혁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6대 이하 그룹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함께 구조조정 등 재벌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6~30대 기업집단 중 부당내부거래 미조사 기업집단은 21개로 이 중 계열사간 내부거래규모가 큰 순위대로 쌍용, 금호 대립, 롯데,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당 등 7개 기업집단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단, 금년도 신규지정 기업집단은 내부거래 현황자료가 미확보되어 있어 금번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조사대상 회사는 기업집단별로 5개씩(그룹 내 모회사 1개, 금융·보험회사로서 내부거래규모가 큰 회사 1개, 자산총액, 당기순이익이 커 지원가능

성이 높은 회사로서 내부거래규모가 큰 회사 1개,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 규모가 커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서 내부거래규모가 큰 회사 2개) 총 35개사가 선정되었다.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 및 상품·용역 부당내부거래로서 특히, 한계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 지원행위, 비핵심업종 및 이업종 영위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계열분리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매개로 한 지원행위, CP고가 매입, 대여금 저리지원, 유상증자 주식 고가인수 등 1~5대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 적발된 지원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동하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운용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용할 방침이다.

기조사(4개)	미 조사(21개)	
	기존(14개)	신규지정(7개)
한화, 한솔, 동부, 동양(한진) <sup>2)</sup>	롯데, 금호, 쌍용, 두산, 동아, 동국제강, 효성, 대립, 코오롱, 고합, 제일제당, 아남, 새한, 진로	(주)대우, 현대정유, 에스오일, 대우전자, 현대산업개발, 신세계, 영풍

주1) 조사기간 : '98. 10. 19~12. 2.

2) 기조사기업집단 중 「한진」은 2000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시 5위로 순위 상승

◆ 조사대상회사 일반현황 ◆

(단위: 억원)

집단명	회사명	영위업종	자산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97	'98	'99
쌍용	쌍용양회	시멘트제조	52,368	12,449	11,081	207	△4,215	822
	쌍용캐피탈*	기타여신금융	5,080	236	811	2	△352	24
	쌍용화재보험*	보험	9,315	750	7,147	35	2	40
	쌍용건설	종합건설	16,531	187	12,133	21	△9,257	21
	오주개발	콘크리트 등	4,373	24	1,484	△134	△3,306	△1,024
금호	금호산업	타이어, 건설 등	46,740	12,785	23,124	△141	△912	493
	금호생명보험*	생명보험	5,609	△1,131	3,477	△317	△291	△634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 등	14,233	7,262	4,161	167	20	619
	아시아나항공	항공운송	36,437	10,469	17,848	△3,982	△1,414	1,096
	금호개발	건설업	6,305	716	1,595	△38	△480	△272
롯데	롯데제과	제과제조	8,306	3,909	8,714	111	107	336
	롯데캐피탈	기타여신금융	4,383	361	401	1	△126	38
	롯데쇼핑	백화점	48,951	16,484	31,953	203	332	592
	롯데상사	무역금	2,076	79	4,053	△17	96	19
	롯데전자	방송수신기 등	601	277	365	76	△42	△49
코오롱	코오롱	화학섬유	18,316	8,486	12,250	25	232	1,522
	코오롱할부금융	기타여신금융	1,200	305	347	16	△173	2
	코오롱상사	무역업	9,207	3,440	14,180	30	△1,079	1,045
	코오롱개발	설비업	1,287	486	16	△1	△4	△158
	코오롱스포츠	기타오락업	1,340	303	215	1	△26	△171
대림	대림산업	건설, 석유화학	39,907	14,988	33,629	27	743	1,872
	서울증권*	증권업	5,589	2,049	1,363	△156	△976	△891
	대림코퍼레이션	무역	1,783	520	9,574	81	56	147
	삼호	건설	4,262	1,050	2,934	26	△194	48
	대림정보통신	정보처리 등	207	34	485	3	4	△12
동국제강	동국제강	제철, 제강	30,431	13,122	14,285	474	508	507
	중앙종금*	기타금융업	48,391	1,638	6,134	171	△984	△833
	연합철강	제철, 제강	10,969	5,178	6,826	△99	125	153
	신중앙상호신용*	상호신용금고	1,972	160	237	19	△73	△178
	부산스틸	제철, 제강	620	178	942	△96	△35	62
제일제당	제일제당	음식료제조	26,209	13,167	22,068	95	1,059	1,193
	제일투신증권*	증권업	3,744	448	1,444	-	△1,239	△761
	제일냉동식품	음식료품제조	442	287	495	7	10	26
	스파클	음식료품제조	269	251	-	△59	△95	△4
	뮤직네트워크	방송업	82	17	134	△106	△87	3

\* 표시된 법인은 3월 결산법인(신중앙상호신용은 6월)으로 '98사업년도(당기순이익은 '96~'98)의 재무상황임

## 디지털경제시대에 있어서의 공정위 정책방향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경제시대에 있어서의 공정위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디지털경제는 시장의 독과점 및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쟁정책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데, 공정위는 동 정책방향을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수립하였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웹(web)을 기반으로 한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위를 「지식

공정위」로 전환하고, 디지털경제시대에 형성되는 「적극적 소비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대처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이버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며, 디지털경제에서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독점,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갈등현상 등 새로이 형성·발전되는 시장에 경쟁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분	정 책 방 향	추진시기
「지식공정위」 구현 (3개 중점과제)	① 「공정거래종합지식경영시스템」을 통한 신속·투명한 업무처리	2000. 6월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2000. 4월
	③ 「사이버정책평가」 및 자체 「여론조사시스템」 구축	2000. 3/4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4개 중점과제)	④ 「전자상거래감시단」 및 「소비자종합홈페이지」를 통한 웹상에서의 감시기능 강화	2000. 6월
	⑤ '인공지능형 감시로봇'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24시간 감시체계」 및 「쇼핑몰평가사이트」 구축	2001. 하반기
	⑥ 「방문판매법」을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법개정 추진	2000. 4/4
	⑦ 전자상거래 소비자 문제를 전담하는 「(가칭)전자거래보호과」 신설	2000. 5월
새로운 경쟁정책상의 문제에 적극 대응 (5개 중점과제)	⑧ 오프라인과 온라인업체간의 갈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2000. 6월
	⑨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계속
	⑩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및 경쟁정책적 측면에서의 BM특허정책 검토	계속
	⑪ 네트워크산업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필수설비원리」 적용방안 검토	계속
	⑫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진입요건 및 물류 등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2000. 3/4

##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전면 직권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사업자 4,000개 업체에 대한 대규모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의 속성상 원사업자의 보복이나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므로 신고사건 위주의 처리방식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근절에 한계가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다양한 범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20,000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수급사업자 16,000개 업체에 대해서는 7~8월중에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업체는 원사업자의 경우 제조업 2,400개 업체는 업종별 원사업자 수 비중에 따라 업종별로 배분한 후 매출액이 높은 순으로, 건설업 1,600개 업체는 70%를 일반건설업에 배분하고 나머지 30%를 시공능력평가액 100억원 이상의 5개 업종별 업체 수 비중에 따라 업종별로 배분한 후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었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원사업자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원사업자 1개 업체당 평균 4개 업체가 무작위로 선정될 예정이다.

'99년 하반기('99. 7. 1~12. 31) 중의 하도급거래

에 대해 이루어지는 동 조사는 계약서면 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 지급 여부, 부당한 대금감액·반품·대물변제 여부, '99. 4. 1 하도급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한 하도급대금 결제 방식(현금비율 유지, 어음만기일 제한)의 이행 여부 등 모든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현금결제비율·어음만기일 등 대금지급조건, 수급사업자의 거래모기업 수, 주거래모기업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 등의 업종별 하도급거래실태도 파악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표 발송, 조사결과입·출력 등을 민간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하여 인터넷을 통한 조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조사대상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사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공정위는 동 조사 결과 나타난 경미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허위응답이 많은 업체와 범위반협의가 큰 업체 등은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범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하도급법령 및 관련 제도의 내용을 인식하게 되어 범위반행위의 사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할인을 인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과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저금리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적용하는 어음할인율을 현행 연 12.5%에서 연 9.0%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6월 1일부터 교부되는 어음에 적용되는 동 어음할인율의 수준은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억제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시중은행 평균 상업어

음할인율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 <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 추이 >

기 간	'97. 12	'98. 12	'99. 5	'99. 6~2000. 3
할인율(연, %)	15.53	10.09	7.84	7.32~7.48

자료 : 한국은행(월중 금액가중평균 금리)

## 4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7일, (주)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주), (주)엘지텔레콤, 한솔엠닷컴(주) 등 4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급하던 단말기보조금 지급수준을 담합결정하여 시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

이들 업체는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지급하던 단말기보조금으로 각 사의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 사의 영업관리팀 팀장들이 '99년 9월중 2회에 걸쳐 모임을 갖고, 보조금 지급규모를 '99년 10월부터 18만원선이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99년 10월 영업정책"을 통해 보조금을 축소지급하였으며, 각 사별로 실제 지급한 보조금을 확인한 결과 동 합의대로 시행되었다. 또한 사업자들은 금번 보조금 지급축소가 4개

사업자의 합의사항임을 대리점에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간에 본 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해 "수도권 지역 4개 공동감시단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동통신용역의 거래조건인 보조금 지급액은 각 사가 자신의 요금 및 서비스 수준, 경영여건 등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동으로 결정한 위 행위에 대해 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인정하고, 3개 중앙일간지에 범위반 사실을 연명으로 공표토록 하고, 총 2,890백만원((주)신세기통신 932,100천원, 한국통신프리텔(주) 924,000천원, (주)엘지텔레콤 577,400천원, 한솔엠닷컴(주) 456,200천원)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였다.

#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7일, 국내 철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회복할 목적으로 철근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8개 전기로 제강사인 인천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보철강공업, (주)한보,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대한제강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 이들 업체는 2000년 1월 14일경 제강사 영업부장 모임에서 철근가격 인상문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인상수준을 제시하였으며, 각 제강사는 동 모임의 결과대로 철근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 2000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설연휴 기간을 제외한 4일 동안 일반, 고장력 철근 6종을 각각 2만원 가량 인상하였다. 또 2월초 철근 수요

처인 건설업체 등에 견적서 또는 가격인상공문을 발송하여 인상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당해 행위에 대해 철근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동 시장에서의 철근 판매가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2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하고, 총 4,002,100천원(인천제철 1,490,100천원, 동국제강 833,400천원, 한국철강 599,600천원, 한보철강 411,100천원, (주)한보 331,600천원, 환영철강 140,100천원, 한국제강 101,600천원, 대한제강 94,600천원)의 과징금 납부와 법 위반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 ● 비상임위원

(2000. 4. 30 ~ 2003. 4. 29)

- 청명택, 이성순

### ● 과장급(부이사관) 전보

심판관리 3담당관/청재찬(鄭在燦, 前 소비자기획과장)

총괄정책 과장/주순식(朱舜植, 前 독점정책과장)

독점정책 과장/이동규(李東揆, 前 하도급기획과장)

경쟁촉진 과장/송하성(宋河星, 前 총괄정책과장)

하도급기획과장/김범조(金範祚, 前 경쟁촉진과장)

### ● 과장급(서기관) 전보

위원장비 서관/유재운(劉載云, 前 심판관리3담당관)

행정법무 담당관/김재수(金在佑)

국제업무 2과장/정중원(鄭仲源, 前 위원장비서관)

유통거래 과장/한철수(韓鐵洙, 前 국제업무2과장)

소비자기획과장/이동훈(李銅勳, 前 유통거래과장)

약관제도 과장/이성구(李星求, 前 행정법무담당관)

### ● 서기관 승진

제도개선과/박원기(朴元鎬)

심판관리 3담당관실/조성국(曹聖國)

### ● 사무관 전보

약관심사과/이슈태(前 철도청)

### ●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2000. 5. 10 ~ 2003. 1. 10)

임재연(나라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도두형(도두형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숙(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양명조(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여정성(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김계원(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의섭(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

곽창호(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